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5

발의연월일: 2021. 3. 9.

발 의 자:양금희·서병수·강민국

서일준 • 윤창현 • 윤재옥

권명호 · 김예지 · 허은아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6조).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명령 제4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	
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	
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
	지 명령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6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
	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